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28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8가단1550 채무부존재확인 등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9. 3. 29.

판 결 선 고 2019. 4. 26.

주 문

1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. 8. 30. 접수 제44145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채권자 B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압류에 기한 9,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취하되었음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28
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전기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28

청 구 원 인

1. 사실관계

가. 원고는 개명전 명의(C)로 경상북도 경주시 D 임야 1759평방미터 중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은 2004. 10. 15.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으로부터 압류당하고 2012. 9. 13.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되어 2012. 11. 28.배분까지 완료되었습니다.

나. 위 부동산에는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의 압류뿐만 아니라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 E 아파트 F 호 채권자 B 이라는 사람의 가압류도 존재하였던 바 이에 소의 [redacted]관리공사는 2012. 11. 28.배분기일에서 위 가압류권자 B 에게 가압류 채권 금90,000,000원에 대한 배분금으로 금54,441,670원을 배분하였습니다.
배분기일에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과 가압류권자 B 을 제외하고는 달리 배분할 채권자는 더 없었습니다.

다. 그런데 위 배분된 가압류권자 B 은 실제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.
위와 같은 사실은 [redacted]관리공사에 제출된 피고 B 의 채권신고서 및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이 위 배분대금을 지급하기 이하여 피고 B 과의 접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.

라. 가압류권자가 위 배분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관계로 [redacted]관리공사는 위 배분금을 공매의뢰 관서인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에 인계하여 피고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28

광역시 [redacted]구청이 위 배분금 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.

2. [redacted]관리공사와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가 위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

가. 가압류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뒤에 피가압류금액의 부존재가 확인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분된 돈은 재배당하거나 재배당할 채권자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[redacted]관리공사나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가 가압류권자인 피고 B 이 채권이 없음을 신고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판결을 받아 오도록 하는 이유는 등기상 가압류권자 B 의 주소가 [redacted] [redacted]구 E 아파트 F 호로 되어 있고 이 주소는 채권신고를 한 B 과 이 사건 피고 B 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.

나. 원고 또한 배분금의 기초가 된 가압류상 가압류권자 B 이 피고 B 과 동일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백방으로 조사해보았더니 가압류권자 B 의 주소 [redacted] [redacted]구 E 아파트 F 호는 피고 B 의 종전주소 (가압류할 당시의 주소)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 G 아파트 F 호의 기재 착오임이 확인되었습니다.

[redacted] [redacted]시 [redacted]구 H 인근이나 [redacted]구 I 등 그 어디에도 E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I 등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.

3. 위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가압류권자 B 은 피고 B 과 동일인임이 확인되고 피고 B 은 채권신고서등으로 원고로부터 받아야 될 손해배상청구금등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는 기어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취지기재의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28

별지목록

[redacted]주시 [redacted]

임야 1759 평방미터